#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83

발의연월일: 2020. 12. 17.

발 의 자:이학영・김정호・최인호

이동주 · 김성환 · 신정훈

이성만 • 이수진 • 이규민

박홍근 · 이장섭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 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선제적인 대응체계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목적과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지역 산업 및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한다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목적과도 상이한 측면이 있는바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수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 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특히, 이 법률안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6682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제 21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